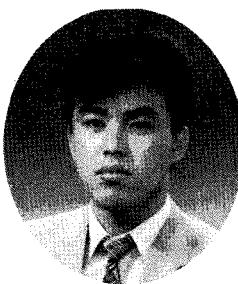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김승진

한국통신(KT) 연구개발원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간사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세번째로 미국 표준화기구(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II. 국제 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 V. 일본 표준화기구(TTC,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 VI. TTA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안)
- VII. 결론 및 국내 대응방향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1. 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우리 현실

미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뒤에서 살펴볼 미 표준화기구와 T1의 조직과 목적 등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의 간명하고 솔직한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여러 각도에서 미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살펴 볼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미국의 변화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 사회·경제 현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실체에 접근하는 첨경(fast track) 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의 근

대화는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일본을 통하여 중계적으로 유입해 왔다. 일제 식민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정책이나 기술 그리고 제도들도 일본을 통한 중역(重譯) 문화의 소산인 경우가 쉽사리 눈에 띈다. 이렇듯 중역의 문화가 언제나 생각처럼 그릇되고 뒤쳐진 것만은 아니다. 물론 반성하고 분발해야 하는 점도 많다. 그러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준비와 방향설정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 등의 독특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의한 경제 성장이 있어왔다.

미국은 정책과 기술의 선도국가로서 개인을 위시한 민간부문이 많은 자율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70년 일본의 통산성 차관인 OECD에서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까지 영미권에서 산업정책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방임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한 고도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정책의 소산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그 이유는 미국도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라는 레이거노믹스의 거대한 실패 이후 일련의 규제와 탈규제 그리고 재규제 정책의 순환에서 보여주듯이 산업정책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고 UR 타결과 WTO 태동을 앞두고 자국 이익 보호에 역점을 둔 극명한 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제 무역위원회(ITC)가 미 의회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48개 산업 가운데서 제약 정보통신 농산물을 비롯한 35개 산업이 덕택에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에 의한 적자생존을 강조해서 신다윈이즘이고 부르기도 한다 – 가 우리 가시권에 명확히 드러난 두 가지 경우를 들어 보겠다. 한 가지는 지적재산권을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

를 초래한다는 예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다. 물질특허의 경우는 정책적 기술적 고려없이 미국에게 유례도 없는 소급 적용을 허용한 결과 일본 유럽에게도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도리없이 소급 적용을 허락했다. 즉, 1985년 9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물질특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 7월(5공 말기)에 일괄타결형식으로 끝을 맺었다. 물질특허의 시행은 87년 7월 1일부터이다. 물질특허의 인정 범위는 ‘이 제도 도입이전에 특허로 출원중인 것, 미국에서 특허가 났으나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까지 보호하기로’ 한 소급 입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후 일본과 EU(당시는 EC)가 강력한 이의를 하자 이들에게도 행정지도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소급 적용을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 신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의 제약업계의 기술도입은 제품마다 기술료를 무는 경상기술료가 87년 67%에서 89년 100%로 뛰어 올랐고, 완제품 수입도 87년에 2천5백31만 달러에서 92년에는 1억4천2백45만 달러로 폭증했다.

다른 사례는 1994년 9월 26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5차 총회에서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의 선출원주의를 받아 들이기로 함으로써 세계 특허 통일화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한 것은 이제 R&D의 결과가 미국의 전유물이거나 최첨단 이던 시절은 지나가고 기술개발 경쟁에 들어섰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의 활력에 방임했던 미국의 지적재산권 영역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자각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지나침이 없다.

정보화사회 – 정보화 사회라는 말도 물론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 로 접어든 요즈음에 정보 그 자체를 물자를 사용하여 산업화하는 지적재산권이야 서

비스 및 기술이전은 물론 서비스와 물자 교역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의 주류가 현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의 가공, 처리, 분배하는 전자통신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4년 1/4분기 산업재산권-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등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등록 건수가 14,310건으로 전년의 12,784건에 비해 12.3% 증가 했고 이 가운데 전기통신 분야가 2,561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구 분	계	기 계	화 학 일 빙	설 유	전 기 통 신	토 목 건 설	체 광 금 속	음 료 위 생	사무용 품인쇄	농 림 수 산	잡 회
특허	3,057	482	497	117	1507	48	164	141	30	14	57
실용신안	2,122	465	28	48	1,074	104	36	38	55	57	217
특·실제	5,179	947	525	165	2,581	152	200	179	85	71	274
구성비	100.0	18.3	10.1	3.2	49.8	2.9	3.9	3.5	1.6	1.4	5.3

2. UR과 지적재산권

최근 국제 조류에서 지적재산권은 UR과 관련되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협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했던 분야가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야다. 그래서 저작권, 특허권, 원산지 표시보호와 같은 8개분야 권리에 대한 보호기준과 침해 물품의 처리 및 단속절차를 논의하는 ‘지적재산권 협상’이 UR의 15개 협상 그룹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이 되어 왔던 점을 상기하면 UR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 싸고 미국과 다른 추격국(catch up countries)들 특히 일본과의 힘겨루기는 쉽게 상상이 가는 일이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표준활동에 적극 관여한다는 증표는 ANSI의 설립 목적에도 드러나 있지만 특히 CCITT활동에서 잘 보여 준다. 미국의 전기통신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CCITT 국내위원회가 국제표준 작성에 매우 활발한 공헌을 지속해 왔다. 그 깊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다. CCITT에 미국의 기고문과 참가활동은 미국 무성이 관리하는 CCITT 미국 국내위원회라 불리우는 ‘국가기구’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 국내위원회는 국제 CCITT 연구위원회 회의에 보내지는 기고문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몇몇 하위 미국 CCITT 연구위원회를 갖는다. 미국내에서 CCITT에 기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시 UR 지적재산권 협상을 되돌아가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가간 통상마찰의 주요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즉,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기술개발 및 창작에 수반된 ‘준렌트’(quasi-rent)의 추구수단으로 보고 강력한 보호규범을 마련 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WIPO의 소관 사항이라고 여겨져 왔던 지적재산권 문제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GATT 체계내에 편입시켜 그들의 약화된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 수지개선, 기득권 유지를 도모하게 되었다. UR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의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또한 선진국과 선진국간에 벌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선진

국이 저작인접권, 원산지 표시보호와 같은 보호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영업비밀 보장, 강제실시권 범위 축소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처리 및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개도국은 이를 반대해 왔다. 후자의 경우는 선출원(일, 스위스, EU), 선발명(미), 원산지 표시보호(미, 일)에 EU, 스위스의 반대, 강제실시권 축소(미)를 EU, 일, 스위스가

반대,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강화(미, 스위스, EU)에 일본의 반대로 집약된다. 결국 이 쟁점들은 어느 정도 미국의 희망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삼고 미국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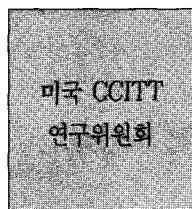
(법인체 및 개인)

국내표준기구

T1,X3,TIA 등

정부기관 NCS,

FCC,NTIA,DCA 등



미국 국가자격

CCITT에
기고

CCITT 위원 자격
(회사기고)

정부 또는 산업체가
주재하는 공공회의

3. 미 표준화기구(ANSI) 소개

미 표준화기구(1981년 창설)는 미국의 자발적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비영리 민간회원 기구로서 미 국가위원회(USNC)를 구성하여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표준화기구는 미국의 자발적 표준체계 활동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고 그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보장’ 기관의 필요에 따라 1918년에 창립되었다. 미국의 표준화 체계는 미 표준화기구와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타 지방행정기관이 협조를 통한 민간부문 주도로 70년이 넘도록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미 표준화기구는 1300여개의 기업을 비롯하여 250여

개에 이르는 직장단체, 기술단체, 노동단체 및 소비자단체 그리고 30여개의 정부기구들을 회원으로 거느리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산업, 통신산업, 정보처리산업, 석유화학 산업,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표준이 있다. 또한 국가가 ANSI의 회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이고 용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타지역 국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미 표준화기구의 주요 기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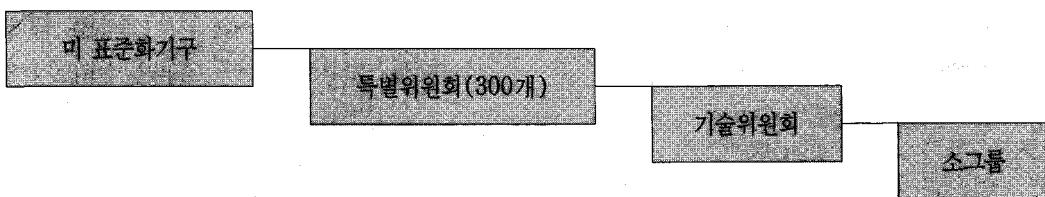
- ▶ 미국의 자발적 표준체계를 근거로 한 자율적이고 적법절차에 따른 합의 조정활동
- ▶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표준을 창출하는 행정활동
- ▶ 미 정부가 국제표준화나 지역 표준화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근거 제공

▶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표준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확산

미 표준화기구는 300여개의 특별목적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산하에는 기술위원회가 있고 기술위원회는 소규모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거느리고 있다.



4.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의 특성

– 특허의 자발적 표준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R&D 유인 – 표준화는 최신기술 최첨단 기술(더 나은 기술)을 채택하는가? ② 비용절감 –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표준화 후 일반 사용자의 유익을 고려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표준을 결정할 것인가? ③ 망 외부성 – 이용자들이 호환성(compatibility) 있는 표준이라는 망(network)에 속해 있음으로써 얻는 효용이나 반사적 이익을 망 외부성이라 한다. 그런데 표준은 일단 선택하고 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표준을 채택한 적정시간(optimal timing)은 언제로 결정할 것인가? ④ 경쟁효과 – 표준은 경쟁을 저지(독과점 방조)하는가? – 를 들 수 있다. 미 표준화기구는 이런 상충점을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조화시키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1) 정부기관과 협조를 통한 민간 주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세계경제 상황에서 누려온 반사이익에 가까운 우월적 혜택을 향유한 민간부문의 활용이다. 그래서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은 (2) 권고 형식의 표준 구현지침이 두드

러 지고 (3) 원칙에 따른 합의를 유도한다. 즉 국가 경쟁력을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래서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의 규정도 ‘기본원칙 – 합의 – 세부원칙’이라는 정교한 협력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표준의 R&D 유인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절묘하게 랑데뷰시킨 것이다.

① 기본원칙 규정

- 특허전용의 원칙
- 공개
- 성명(계약조건)
- 통지
- 특허조사 책임

② 당사자 재량권 부여

- 면허 허여
- 계약
- 특허 조사

③ 표준 개발자와 특허보유자의 합의에 따른 세부원칙 존중

- 면허 허여 형식
- 면허 허여 신고

물론 법규정이라는 체계는 하나의 아주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

처럼 일관되고 매끄러운 하나의 세계관을 유지한 메카니즘은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와 같이 R&D 분야에서 추종국(follow up country)인 경우는 모방과 개량 그리고 방어 전략과 같은 많은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표준화기구가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권고와 같은 간접적 수단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이란 목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4) 일관된 표준화 사후처리에서 볼 수 있다. 즉 미표준화기구는 표준 채택 이후에 특허에 대해서도 표준 이전의 특허와 동일한 법리 적용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표준에서 망외부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미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을 위해 특허와 표준화를 둘러싼 이해 관계의 충동을 합의 기구를 통해 잘 회석시키고 표준이 갖는 반 경쟁 효과를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합의 체제의 활용은 UR과 WTO가 격려하고 촉진하게 될 국제교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한 경쟁에서 규제나 보호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차원의 전략이기도 하다. 즉 미표준화기구는 (5) 자율적 심의 및 사법 기능을 통해 특히 독점성과 표준의 보편성을 타협하고 상보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놓았다.

⑦ 표준심의위원회(Board of Standards Review)

- 표준승인
- 표준철회

⑧ 이의소원위원회(ANSI appeal board)

- 면허조건 실질 심사
- 승인이나 승인처리에 관한 이의제기 평결

이같은 합의 중재 기구의 활용은 최근에 WIPO가 중재 센터를 개설함으써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이 발하는 느낌이다. WIPO는 기업체와 개인들 사이

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라이센스 계약상 조항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7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국가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1995년 출범한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규정된 분쟁 당사국간에 보복조치를 통해 강제로 해결 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당사자간 협상(negotiation, consultation)을 통한 직접해결, 구속력을 갖는 중재(arbitration), 침해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WIPO가 중재센터를 신설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은 전문 상설로 미국중재협회(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재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후 중재 추세에 비춰볼때 우리가 미표준화기구의 특허 정책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전 중재역할을 심의위원회와 이의 소원위원회이다.

5.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

(1) 미 국가표준안의 특허 전용

특허전용(including of use)을 조건으로 한 미국가표준안(proposed American National Standard)의 제정(drafting)이 정당한 기술적 근거를 갖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미국가표준안이 특허를 전용한다는 통지를 미표준화기구에 한 경우는 미표준화기구 절차 (2) 절에서 (5) 절까지를 따른다.

(2) 특허보유자의 성명(statement)

미표준화기구는 미국가표준안을 승인하기 앞서 (형식상 미표준화기구가 승인한), 특허 보유자로부터 피특허인이 보유치 않은은 물론, 보유할 것으로

도 여겨지지 않은 미국 표준화기구의 전용특허(invention)의 효과에 관하여 전면 포기(general disclaimer)한다는 형식의 확약(assurance)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확약을 받는다.

(1) 신청자는 표준을 구현할 목적으로 보상없이 면허를 전용할 수 있다.

혹은

(2) 신청자는 부당한 차별을 명백히 배제한 합리적 조건(term and condition) 하에서 신청인은 면허를 전용할 수 있다.

면허의 조건은 미표준화기구 산하 위원회(council)에 제출하여 검토케 한다. 만약 개별 피면허인들이 면허의 조건을 승인하거나 수락을 표명하였을 경우 이들의 성명도 함께 제출한다.

(3) 성명서(record of statement)

미표준화기구는 특허보유자의 성명서(성명서와 부당한 차별의 배제한 조건을 참작할 근거가 되는 성명)를 서류철에 유치, 보관한다.

(4) 통지

미표준화기구가 특허보유자로부터 (2), (1) 혹은 (2), (2)에서 규정한 확약을 받았을지라도 표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주의: 이용자는 표준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을 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의 공개(publication)로 인하여 그 표준과 관련된 청구권과 특허권의 정당성(validity)에 관한 지위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특허보유자는 권리(*청구권과 특허권)가 살아 있는 면허를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면허 신청인들에게 허여한다는 의도를 담은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자(publisher)에

게 문의한다.

*는 역주임

(5) 특허조사(identifying)에 관한 책임

미표준화기구는 미국 표준이 요구하는 면허가 전용한 모든 특허를 조사할 책임이 없음은 물론, 이 기구가 유의해야 할 특허의 범위나 법적 타당성(legal validity)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6. 미국 T1위원회 소개

미국 T1위원회의 설립은 1984년 벨 시스템의 분할에 수반하여 전국적인 통신망의 통일성의 유지의 필요성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하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1984년 2월에 생겨났다. T1위원회는 미국 표준화기구(ANSI)의 인증 위원회로서 교환사업자 표준화협회(ECSA: 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가 활동 후원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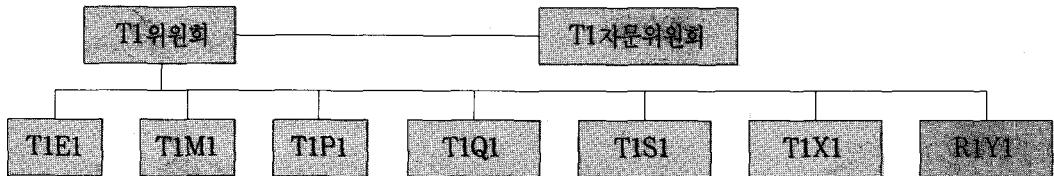
T1이 하는 일은 ① 전기통신망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미국 표준의 제안 및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제안은 ANSI에 의해 미국 표준으로 승인된다. ② 각종 국제표준화기관이 검토중인 표준화 과제에 관한 제안하는데 앞에서 치적했듯이 이 제안들은 주로 국무성을 통한 CCITT에 기고하는 일 이 주된 것이다.

T1의 회원은 ANSI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미국 뿐만 아니라 외국 관계자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회원은 4개의 범주로 나뉘 있고 표결권을 갖는 정회원과 표결권을 갖지 않는 참관자(ob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T1의 조직과 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상중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기술소위원회(TSC)		주요활동영역
T1E1 망 단말 인터페이스		액내 기기로부터 통신망으로의 접근 인터페이스
T1M1 망간 운용, 보수, 관리		망간접속의 계획과 기술, 망 운용 시험운용시스템과 그 기기, OAM & P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T1P1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계획, 프로그램 관리		복수의 TSC와 관계되는 특별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프로그램 관리(예; 개인통신:PCS), 표준계획
T1Q1 통신품질		음성, 음성대역 데이터, 패킷데이터, ISDN 디지털 회선, 광대역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와 같은 것들의 품질 표준
T1S1 서비스, 아키텍처, 신호방식		ISDN 아키텍처와 서비스, ISDN 교환과 신호 프로토콜, 공통선 신호방식, 개별선 신호방식
T1X1 디지털 계층 구조와 동기방식		통신사업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
T1Y1 특별과제		음성 및 화상 부호화, 복호화, 통신시설의 방화대책, 전자 유도대책

7.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T1) 지적재산권 정책

1.0 개요

특허를 제한하는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T1)의 지적재산권(IPR) 정책을 GSC-1에 제출한다.

2.0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 지적재산권 정책

초창기에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자체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제정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렸다. 다년간 고심한 끝에 미 전기통신표준

위원회는 미 표준화기구(ANSI)의 특허정책을 계속 준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 절차 규정집 제14장은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미 표준화기구는 미 국가표준의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1987년판 공개안 부록에서 이를 추인하고 있다.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은 자체의 협력발생요건에 따라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규정한다.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의 규정을 넘어선 지적

재산권 정책을 갖지 않는다.

3.0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 구현 지침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10년 넘게 표준개발자와 지적재산권 보유자 모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입장에서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을 적용해 왔다. 더욱이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이 오랫동안 컴퓨터와 네트, 빠트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표준을 승인하고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미 표준화기구는 자체의 특허정책을 재승인하면서 가능하다면 구현지침(guidelines)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서 미 표준화기구는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 구현지침"이라는 소책자를 순차적으로 보완발간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명령(mandatory)은 아니고 미 표준화기구 특허정책의 구현과 이해를 돋고자 한 것이다. 이 지침은 개발중인 표준에 필수적인 (intrinsic) 특허의 신속한 공개를 권고한다. 또한 이 지침은 개발중인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면허에 관한 신속한 의사표명을 권고하며, 표준이 채택되고 난 다음에 특허가 발견된 경우에도 대처할 방도를 일러준다.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가 미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을 채택했으므로 구현지침의 준용도 아울러 권고한다.

4.0 결론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기술적 유체물의 공유와 같은 표준기구(PSO)들 사이의 협력을 상관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사의 공유를 수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표준기구(POS)들끼리 양립하는 지적재산권들을 전용하게 되면 덩달아 서류의 교류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미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정책에서 서류와 노트의 공유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표준기구(POS)가 엄격한 지적재산권 정책을 임의로 구현하게 되면 전기통신표준개발의 범세계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류를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선화, 정석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I)", TTA JOUN, 제33호, pp.66-76.
2. 이선화, 이건찬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II)", 제34호, pp.94-108.
3. 『발명특허』, 한국발명특허협회, 1994년, 5월, 제219호.
4. 『정보통신 표준화 동향 세미나』, 한국통신기술협회, KT연구개발원, 1993, 7.
5. 『전기통신표준위원회 운영규정』, 한국통신기술협회, 1991, 6.
6.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0, 12.
7. 『특허, 상표실무자를 위한 세미나』,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1993.
8. 『선진 국가표준기관의 현황분석』, 한국표준연구소, 과학기술처, 1989.
9. 『제1기 외국산업재산권과정』,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1993.
10. 『산업재산권기초과정』,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1993.
11. 『고도 정보화사회를 전망한 전기통신 표준화 기본방안』, 한국통신기술협회, 1993, 6.
12. 방석호, 『지적재산권분야의 경쟁정책연구』, 통신개발원, 1990, 12.
13. ED. Z. Griliches, 『R & R, Patent, and Productivity』, Univ. of Chicago press, 1984.
14. D.A.Burge, 『Patent and Trademark Tactics and Practice』, JHON WILY & SONS, 1980.